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5. 12. 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95호로 2015년 11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우리구 자치법규(조례) 중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별지서식에 대해 일괄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토록 허용하고 있는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나.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제 정비하려는 것임.
- 주민등록번호를 처리¹⁾ 하려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정되므로, 현행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를 정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하는 것은 상위법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적절한 조치로 보임.
- 또한, 본 조례는 1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개정 취지가 같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동일한 내용이므로 입법기술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참 고 자 료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